

중국 질검총국, 일본산 농식품 수입금지 확대

* 2011. 4. 11 상하이 aT센터

중국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 총국은 지난 3.28일 일본 5개현의 일부 식품 수입금지 공고에 이어 4.8일부로 일본 12개현에서 생산된 농식품 및 사료로 수입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관리를 아래와 같이 강화함

<주요내용>

① 12개현의 식용농식품 및 사료 수입금지

- 기존의 5개현에서 후쿠시마(福島)현, 군마(群馬)현, 도치기(栃木)현, 이바라키(茨城)현, 미야기(宮城)현, 야마카타(山形)현, 니가타(新潟)현, 나가노(長野)현, 야마나시(山梨)현, 사이타마(埼玉)현, 도쿄(東京)도, 지바(千葉)현 등 12개현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금지
- 유제품, 채소, 과일, 수산물 등 일부식품에서 식용농식품 및 사료에 대해 수입을 금지

② 일본산 식품 방사성 물질 검측강화

- 본 공고에 따라 일본 기타지역에서 제품을 수입할 시에도 일본에서 발급된 방사성물질검측 합격증명 및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며, 중국 각 검역부서는 방사성 물질 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통관 불합격 시 공포해야 함

③ 일본식품 수입상 등록관리 실시 및 제품 판매정보 기록 요구

- 각 검역부서에서는 일본 수입식품의 모든 해외 수출상 또는 대리상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실시함
- 일본산 수입상은 제품의 수입·판매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제품상에 품목 상세정보 및 납품시기 등을 기록해야함

④ 일본산 수산물 수입 사전 승인절차 실시

- 일본산 수산물¹⁾은 수입 시 사전 승인절차를 요구함. 이에 따라 수입동식물 검역허가증 작성 시 수산물 원료 양식지역 위치 정보 등을 표기하고, 가공공장, 운송(경유)노선 및 선적항의 명칭을 표기해야함

1) HS코드 : 0302110000-0307999090, 1212201010-1212209090, 1603000090-1605909090

[첨부]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공고원문 및 번역본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当前位置：国家质检总局>政务公开>局令公告>总局公告>2011年

2011年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关于进一步加强从日本进口食品农产品检验检疫监管的公告》(总局2011年第44号公告)

2011年第44号

关于进一步加强从日本进口食品农产品
检验检疫监管的公告

鉴于日本福岛核泄漏事故对食品、农产品质量安全的影响范围不断扩大、影响程度不断加重，世界上众多国家和地区也在不断加强防范措施，为确保日本输华食品、农产品的质量安全，根据《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进出境动植物检疫法》及其实施条例的规定，现就有关事项公告如下：

一、自即日起，禁止从日本福岛县、群馬县、栃木县、茨城县、宫城县、山形县、新潟县、长野县、山梨县、埼玉县、东京都、千叶县等12个都县进口食品、食用农产品及饲料。

二、进口日本其他地区生产的食品、食用农产品及饲料，报检时应提供日本政府出具的放射性物质检测合格的证明、原产地证明。各地检验检疫机构要对进口的食品、食用农产品及饲料进行放射性物质检测，合格后方可进口；

三、各地检验检疫机构要按规定对所有日本输华食品的境外出口商或代理商实施备案管理。

四、日本食品的进口商应按要求建立进口和销售记录制度，如实记录日本输华食品的名称、规格、数量、生产日期、生产或者进口批号、保质期、出口商或购货者名称及联系方式、交货日期等内容。

五、从日本进口水产品（HS编码：0302110000-0307999090，1212201010-1212209090，1603000090-1605909090）应事先办理检疫审批手续。在《进境动植物检疫许可证申请表》中注明如下信息：在“产地”栏中注明水产品原料养殖地区所在县名称或捕捞区域及其联合国粮农组织渔区编号。在“运输路线”栏中注明加工厂地址及产品运输路线，日本境内运输的，须注明途经县名；经海运的，须注明启运港口。

二〇一一年四月八日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일본 수입 농식품에 대한 검사 검역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
(총국 2011년 제44호 공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가 농식품 품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가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세계 각 지역에서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 수입한 농식품의 품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당일부터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군마(群馬)현, 도치기(栃木)현, 이바라키(茨城)현, 미야기(宮城)현, 야마카타(山形)현, 니가타(新潟)현, 나가노(長野)현, 야마나시(山梨)현, 사이타마(埼玉)현, 도쿄(東京)도, 지바(千葉)현 등 12개 지역의 농식품 및 사료의 수입을 금지한다.

2. 일본 기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 및 사료를 수입할 경우 통관 검역 신고 시 일본 정부에서 발급한 방사성 물질 검측 합격 증명 및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지 검사 검역 부서는 수입 농식품 및 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합격할 경우 수입을 허가하며 불합격할 경우 규정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3. 각지 검사검역 부서는 규정에 따라 대중국 일본 수입 식품의 모든 해외 수출상 또는 대리상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일본 식품 수입상은 요구에 따라 수입 및 판매 기록 제도를 실시하고 대중국 일본 수입 식품의 명칭, 규격, 물량, 생산시기, 생산 또는 수입 로트 번호, 유통기한, 수출상 또는 구매자의 명칭 및 연락처, 납품시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일본에서 수산물(HS코드 : 0302110000-0307999090, 1212201010-1212209090, 1603000090-1605909090)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 동식물검역허가증신청서'에서 다음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산지'란에서 수산물 원료 양식 지역이 위치하는 현의 명칭이나 어획 지역 및 해당 FAO 어구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운송노선'란에서 가공 공장의 주소 및 제품의 운송 노선을 표기하여야 하고 일본 국내 운송할 경우 경유하는 현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하며 해상운송의 경우 선적항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2011년 4월 8일

※ 자료원 : 중국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